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15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7. 4. 김향숙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2024. 7. 1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4. 7. 17.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35호
- 예고기간: 2024. 7. 4. ~ 2024. 7. 9. (5일간)
- 예고결과: 의견있음(1건)
- 의견내용

조례안	의견내용	사유
<p>제4조(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계획의 수립) ①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2조3항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타지역 생산품을 들여와 지역에서 판매만 할 경우 가격 경쟁력, 유통 등 부분에서 영세한 지역 생산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생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초래 등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결과 발생 우려됨. -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특정 지역 상품에 대한 강행 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 적절한 문맥이 요구됨. -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규제에 의한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업체의 외부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제4조 1항 규정을 ‘~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3년부터 도내 4개 시군에서 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 상에도 구매 촉진을 위한 규정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제정되어 있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노력과 타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안 4조에서 강행조항으로 규정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의조항 변경의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조례 시행의 추진력 확보 측면에서 반영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없음

9. 심사결과: 2024. 7. 17.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